



차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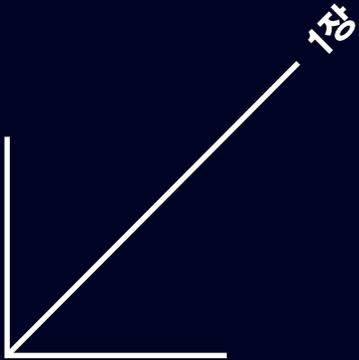
1장 · 사무실 착륙, 직장인 되다!

- 01 · 직장인! 이런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 16
| 토막상식 | 판례, 행정해석 읽는 법 19
- 02 ·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취소되었다고? · 20
- 03 · B형간염 보균자는 입사시 건강진단에서 탈락하나? · 23
| 토막상식 | 신용불량자도 취업할 수 있을까? 27
- 04 · ‘수습기간’은 아직 정식 입사가 아니다 · 28
- 05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32
- 06 ·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말이 없다? · 35
| 토막상식 |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다단계판매를 하라고? 37
- 07 · 채용조건 부풀리는 헤드헌팅에는 낚이지 말자 · 38
- 08 ·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적지 말자 · 41
| 토막상식 | 입사지원서에 임신 사실을 기재해야 할까? 43
- 09 · 나는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일까? · 44
- 10 · 꿈의 자리, 임원은 근로자일까? · 52
- 11 · 사장 말긴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자 · 55

- 12 · 해외 현지법인에 취업하면 어느 나라 노동법을 적용받을까? · 57
- 13 · 글로벌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기 · 60
- 14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 63
|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69

2장 · 병아리 같은 신입사원의 필수 체크리스트

- 15 · 직장인이 사랑하는 휴일 · 72
- 16 · ‘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쉬는 날인가? · 77
- 17 · 금쪽같은 휴일을 주말에 빼앗길 수 없다! ‘대체휴일제’ · 80
- 18 ·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데 · 84
- 19 · 쉬는 시간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다! · 90
- 20 · 들쭉날쭉 근로시간, ‘보상휴가제’가 대안이다 · 93
- 21 · ‘탄력적근로시간제’로 근로시간을 탄력성 있게! · 95
- 22 · ‘연장근로’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 · 97
- 23 · 외근하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쳐주나? · 100
- 24 · 입사한 지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 가나? · 103
- 25 · 직장생활 중 군대 가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 106
- 26 ·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도 ‘배치전환’ 한 적 있다 · 109
- 27 · 사내연애!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 113
- 28 · 상사 뒷담화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 117
- 29 · 직장에서 왕따당하면 어떻게 할까? · 120
- 30 · 연봉정보 누설로 징계받아도 할 말 없다 · 123
|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류 | 휴가제 125



1장

사무실 착륙, 직장인 되다 !

- 01 · 직장인! 이런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 02 ·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취소되었다고?
- 03 · B형간염 보균자는 입사시 건강진단에서 탈락하나?
- 04 · '수습기간'은 아직 정식 입사가 아니다
- 05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06 ·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말이 없다?
- 07 · 채용조건 부풀리는 헤드헌팅에는 낚이지 말자
- 08 ·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적지 말자
- 09 · 나는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일까?
- 10 · 꿈의 자리, 임원은 근로자일까?
- 11 · 사장 말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자
- 12 · 해외 현지법인에 취업하면 어느 나라 노동법을 적용받을까?
- 13 · 글로벌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기
- 14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연차휴가 안 쓰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다



2012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여름이 아니라 이른 봄에 휴가를 떠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점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라는데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 연간 15억원가량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네요.

또 2012년 5월에는 정보통신 기업인 K사의 회장과 지사장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지요.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연차수당이란?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는 수당은 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에 의한 수당입니다. 법에서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순전히 관례와 행정해석으로 인정된 개념이지요.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 입사 후 80% 이상 출근해 2014년 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직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직원은 2014년 연말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한 직원은 연차휴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으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퇴직하는 해에 휴가 사용이 가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해 같은 해 10월 5일부로 퇴사하는 직원의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종 신청서에는 재해 사실 등에 대해 회사의 확인 날인을 받는 난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에 어떻게 재해가 발생했는지 재해경위를 작성해 회사와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검토해 산재인지 아닌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보통 직장 다니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사고 앞뒤 정황을 보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산재로 승인해줍니다. 산재신청했다고 무턱대고 인정해주지는 않지요.

그럼 회사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초기 중요한 자료 수집이나 해당 법규를 알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쓰러진 경우 최근 한 달간의 업무량이 평상시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명확한 근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연량, 음주량도 비교하고, 고참이나 동료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차근차근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토막 상식

스텐트맨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2년 11월부터 가수나 무용수, 연기자, 보조출연자, 영화나 드라마 현장 스태프, 스텐트맨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연이나 촬영 중에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했죠.

가입 대상은 예술인 가운데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연예술인인 가수, 연극인, 무용수, 뮤지컬배우, 무술연기자, 보조출연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지원 인력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월 보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월 11,000원에서 4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지요.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증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됩니다.

